

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4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5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미사도서관 개관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(안 제3조)
- 나. 도서관 사용료와 시설사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다. 자원봉사자 운영(안 제18조의2)
- 라. 도서관운영위원회 정비(안 제21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가. 「도서관법」 제7조, 제33조
- 나.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9조
- 다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0. 4. 22. ~ 5. 13.(20일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

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에 “제1장 총칙” 을 삽입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 “도서관자료 “(이하 ” 자료” 라 한다)란” 을 “ “도서관자료” 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 중 “금전전” 을 “금전,” 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사용료 등) ①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박물관·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,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회원)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대하여” 를 “대해서” 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자료를 망실 또는” 을 “자료를 잃어버리거나, 자료·시설

물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망실 또는” 을 “잃어버리거나” 로 한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자원봉사자)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·운영 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21조제3항 중 “관장과 문화계·교육계 전문인사” 를 “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문화계·교육계 전문가” 로, “사람으로” 를 “사람으로 하며, 위촉직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” 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담당주사가” 를 “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” 로 한다.

제26조 중 “대하여” 를 “대해서” 로 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제28조 중 “아니한” 을 “않은” 으로 한다.

제29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시행에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부서명	도서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
	팀장 직위 · 성명	운영지원팀장 강미정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강미정 (790-5246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장 총칙</u>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도서관자료”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란 인쇄자료, 필사자료, 시청각 자료, 마이크로형태자료, 전자자료,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(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)로서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.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<u>“독서문화”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.</u></p> <p>7. <u>“독서장애인”이란 시각장애,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.</u>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<u>“도서관자료”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6조(금전 등의 기부) 시장은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·시설·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<u>금전</u>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경우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</p>	<p>제6조(금전 등의 기부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전,</u> ----- -----</p>

<p>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제10조(이용료) <u>도서관의 시설이용, 자료의 대출과 열람은 무료로 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0조(사용료 등) ①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<u>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11조(업무)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,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11조(업무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박물관·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,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
<p>제13조(회원) ① <u>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</u></p> <p>2. <u>하남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·단체</u></p> <p>3. <u>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</u></p> <p>4. <u>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·단체</u></p> <p>② <u>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.</u></p>	<p>제13조(회원) <u>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15조(관외대출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15조(관외대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<u>대하여</u>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----- <u>대해서</u> ----- -----.</p>
<p>제16조(변상) ① 도서관의 <u>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</u> 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<u>망실 또는 훼손하였다</u>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변상) ① ----- <u>자료를 잃어버리거나, 자료·시설물을</u>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 <u>잃어버리거나</u>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자료의 기증) ① <u>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,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선정기준에 의해 등록·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기증된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신 설></p>	<p>제18조의2(자원봉사자)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<u>모집·운영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</u></p>
<p>제21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<u>관장과 문화계·교육계 전문인사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</u>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는 <u>사람으로</u> 한다.</p>	<p>제21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문화계·교육계 전문가</u> ----- ----- <u>사람으로 하며, 위촉</u></p>

	직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---.
제25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도서관 담당주사가 된다. ② (생략)	제25조(간사) ① ----- ----- <u>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실비변상)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<u>대하여</u>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26조(실비변상) ----- ----- <u>대해서</u> ----- ----- -----.
제27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이 조례에서 <u>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하남시립도서관 장에게 위임한다.</u>	<삭 제>
제2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<u>아니한</u>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「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28조(준용) ----- <u>않은</u> ----- ----- -----.
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9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

관계 법령

□ 「도서관법」

제7조(도서관의 이용·제공 등)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3. 25.>

②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·미술관·문화원·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, 행정기관,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대학도서관·학교도서관·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3. 25.>

제33조(사용료 등)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9. 3. 25.>

□ 「도서관법 시행령」

제19조(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)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 9. 21>

1.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
2. 개인연구실·회의실 등 사용료
3. 회원증 발급 수수료
4. 강습·교육 수수료
5. 도서관 입장료(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)

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